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1989년 2월 21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통과

2002년 4월 28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거 제1차 개정

2013년 6월 29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 등 12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거 제2차 개정

2018년 4월 27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등 6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거 제3차 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수입상품검사

제3장 수출상품검사

제4장 감독 관리

제5장 법률 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상품검사 강화, 수출입상품검사 행위 규범화, 사회 공공이익과 수출입 무역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대외 경제 무역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 촉진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이 설립한 수출입상품검사부처(이하 '국가 상품검사부처')가 중국 수출입상품검사를 주관한다. 국가 상품검사부처는 각 지역 수출입상품검사기관(이하 '상품검사기관')에 설립되며 관할 지역 수출입상품검사를 관리한다.

제3조 상품검사기관과 국가 상품검사부처 허가를 받은 검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상품을 검사한다.

제4조 수출입상품검사는 인류 건강과 안전 보호, 동물 혹은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환경 보호, 사기 행위 방지, 국가 안보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상품검사부처가 검사할 수출입상품 목록(이하 '목록')을 제정, 조정하고 공포하여 실시한다.

제5조 목록에 등재된 수출입상품은 상품검사기관이 검사한다.
앞 조항에서 규정한 수입상품은 검사 없이 판매, 사용할 수 없다. 앞 조항이 규정한 수출상품은 검사 불합격 시 수출할 수 없다.
본 법 제1항이 규정한 수출입상품 중 국가 규정에 부합하여 검사 면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령자 혹은 발송자가 신청하면 국가 상품검사부처 허가 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6조 반드시 실시할 수출입상품검사란 목록에 등재된 수출입상품이 국가 기술 규범 강제성 조건에 합격하는지 평가하는 활동이다.
평가 절차에는 샘플링, 검사, 점검이 있으며 평가, 검정, 합격 보증, 등록, 인가, 허가 및 각 항목의 조합이 포함된다.

제7조 목록에 등재된 수출입상품은 국가 기술 규범 강제성 조건에 따라 검사하고 아직 국가 기술 규범 강제성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즉시 제정한다. 제정 전까지는 국가 상품검사부처가 지정한 해외 관련 표준에 따라 검사한다.

제8조 국가 상품검사부처가 허가한 검사기관은 대외 무역 관계자 혹은 해외 검사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상품을 검사 검정할 수 있다.

제9조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한 기타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혹은 검사 항목은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국가 상품검사부처와 상품검사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 관련 정보를 즉시 수집하고 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상품검사부처와 상품검사기관 작업자는 수출입상품검사 업무 실시 중 알게 된 상업기밀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수입상품검사

제11조 본 법에서 상품검사기관이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수입상품 수령자 혹은 그 대리인은 통관 지역의 상품검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본 법에서 상품검사기관이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수입상품 수령자 혹은 대리인은 상품검사기관이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품검사기관은 국가 상품검사부처가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을 발급한다.

제13조 본 법에서 반드시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수입상품 외의 수입상품 수령자가 수입상품 품질 불합격 혹은 파손이나 부족 상황을 발견하여 배상을 위한 상품검사기관의 증명이 필요하면 상품검사기관에 검사 증명서를 신청한다.

제14조 중요한 수입상품과 대형 부대 설비에 대해 수령자가 대외 무역 계약 약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적재하기 전에 사전 검사, 제조 감독 혹은 선적 관리해야 하고 주관 부처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품검사기관은 수요에 따라 검사에 참여할 검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상품검사

제15조 본 법에서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수출상품의 발송인 혹은 대리인은 검사기관이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검사기관에 신고한다. 상품검사기관이 국가 상품검사부처가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6조 상품검사기관 합격 후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상품은 검사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수출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다시 세관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험 화물 수출용 포장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상품검사기관에 포장 용기의 성능 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위험 화물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검사기관에 포장 용기 사용 검정을 반드시 신청한다. 검정 합격을 거치지 않은 포장 용기를 사용한 위험 화물은 수출할 수 없다.

제18조 부패 변질이 쉬운 식품을 선적 수출하는 선박과 컨테이너에 대해 운송업자 혹은 컨테이너 회사는 적재 전에 검사를 신청하고 불합격 시에는 적재할 수 없다.

제4장 감독 관리

제19조 본 법에서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수출입상품 이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 상품검사기관이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한다.
국가 상품검사부처는 샘플링 검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혹은 관련 부처에 검사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상품검사기관은 대외 무역 편의를 위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수출상품에 대해 출고 전 품질 감독 관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 수출입 화물 발송자의 대리 신고자가 신고 수속할 때 상품검사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한다.

제22조 국가 상품검사부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 수출입상품을 검사 검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 상품검사부처와 상품검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국가 상품검사부처가 허가한 검사기관의 수출입상품검사 검정을 감독하고 샘플링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 상품검사부처는 국가 인증 제도에 의거하여 수출입상품에 대해 인증 관리한다.

제25조 상품검사기관은 국가 상품검사부처와 해외 관련 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혹은 해외 관련 기관의 위탁으로 수출입상품 품질을 인증하고 합격 상품에 품질 인증 마크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 상품검사기관은 본 법에 의거하여 허가 제도를 실시한 수출입상품을 검정 관리하고 증명서를 확인하며 화물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제27조 상품검사기관은 수요에 따라 검사 합격한 수출입상품에 대해 상품검사 마크 혹은 봉인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제28조 수출입상품 신고자가 상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원래 상품을 검사하였던 기관 혹은 상급 상품검사기관, 국가 상품검사부처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 신청을 받은 기관 혹은 국가 상품검사부처는 즉시 재검사하고 결론을 내린다.

제29조 당사자가 상품검사기관, 국가 상품검사부처의 재검사 결론에 불복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의거하여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국가 상품검사부처와 상품검사기관이 책임을 이행할 때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수호하며 법정 직권과 법정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

국가 상품검사부처와 상품검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수행할 때 우수한 정치관, 업무에 대한 소양을 갖춘 업무팀을 구성한다. 상품검사 작업자는 정기적으로 업무 교육과 심사를 받고 합격하면 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한다.
상품검사 작업자는 직무에 충실하고 서비스 자세가 뚜렷하며 직업 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제31조 국가 상품검사부처와 상품검사기관은 내부 감독 제도를 수립하여 업무자의 집행 상황을 감독 조사한다.
상품검사기관 내부에 신고 접수, 검사,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주요 업무의 책임 권한을 확정하고 상호 분리하고 견제해야 한다.

제32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국가 상품검사부처, 상품검사기관 및 업무자의 법률과 규칙 위반 행위를 신고, 고발할 수 있다. 고발,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책임에 따라 즉시 조사하고 고발자,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엄수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3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검사기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수입상품을 미검사 상태로 판매, 사용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수출상품을 미검사 상태로 임의 수출하면 상품검사기관이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의 5%이상 2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34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상품검사부처의 허가 없이 임의로 수출입상품검사 검정 업무를 실시하면 상품검사기관이 불법 경영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저질, 가짜, 대체 상품을 수입 혹은 수출하거나 혹은 불합격 수출입상품을 합격으로 속여 수출입하면 상품검사기관이 수입 혹은 수출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화물 가치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상품검사 증명서, 날인, 마크, 봉인 표시, 품질 인증 마크를 위조, 변조, 매매, 절도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그 정도가 형사 책임 처벌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화물 가치 전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국가 상품검사부처, 상품검사기관 작업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상업 기밀을 누설하면 법에 의거하여 행정 처분하고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국가 상품검사부처, 상품검사기관 작업자의 직권 남용, 고의적 학대, 사리 추구, 검사 결과 위조 혹은 직무 소홀, 증명서 발급 지연 등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9조 상품검사기관과 기타 검사기관은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하고 검정 업무를 처리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제40조 국무원은 본 법에 의거하여 실시 조례를 제정한다.

제41조 본 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